

# 서울특별시 초·중·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194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8년 10월 17일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
## 1. 제안이유

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면제를 통한 응시자 비용 부담 완화 및 교육평등 이념 구현과 국민권익위원회의 「국민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-국민생활의 경제적 비용부담 완화」 권고사항 이행을 위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서울특별시 초·중·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의 폐지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별첨 3

○ 초·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2조(수수료)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1)

다. 협의 : 교육부 및 전국 시·도교육청관계자 회의, 교육재정과 협의

라. 기 타

○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 없음

○ 입법예고(2018. 9. 12. ~ 10. 2.) :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별첨 2

○ 교육규제심사 : 해당 없음

○ 부패영향평가 : 해당 없음

○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초·중·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 초·중·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첨 1】

서울특별시 초·중·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 
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(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)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서울특별시 초·중·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와 관련하여 비용추계 해당 없음

4. 작성자

-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행정7급 이설영 (02-3999-547)

【별첨 2】

입법예고 결과 요약서(제14조 관련)		
의견제출자	제 출 의 견	조 치 내 용
	의견 없음	

## 【별첨 3】

### 관계법규

#### ■ 초·중등교육법 시행규칙

[시행 2018.3.1.] [교육부령 제148호, 2018.2.26., 일부개정]

- 제42조(수수료)** ① 시험 응시 수수료 및 검정고시에 따르는 각종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와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.